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20536(본소), 2020나32054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20536(본소), 2020나320543(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단655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박현민, 배주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김수호, 진광석

변론 종결 2022. 4. 22.

판결 선고 2022. 6. 2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단655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2022.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항소취지정정서 중 '2018. 1. 21.'은 '2018. 1. 23.'의 오키로 보인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남편 B, 피고 및 E은 2013. 10. 17. 안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7.부터 2014. 5.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6. 10. 17.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60%는 피고가, 나머지 주식 40%는 E이 보유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1호증 문서의 표제는 '차입금 상환 합의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주식양도계약인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와 원고는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7. 6. 27.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차입금(그 실질은 피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을 양도대금 140,078,41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다.항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미 지급한 6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잔금 80,078,41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양도자와 양수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 및 양수금액은 첨부 1에 따른다.

<첨부1> 양도 및 양수확인서

140,078,410	60,000,000	80,078,410
-------------	------------	------------

나. 잔금은 2017년 10월 15.일로 한다.

다. 본 합의서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대표이사의 선임, 변경 및 업무 일체를 양도한다.

3. 나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항의 원상복구의 권한을 가지며, 집행된 금원은 반환한다.

4.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일자가 생략된 대표이사 사임서를 입회자(E)에게 위탁하며, 입회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행한다.

5.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합의일까지 이행된 금액을 영수하여 확인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2017.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4.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8. 7. 9.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D이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기술 및 운영을 맡기로 하고 D과 함께 안경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경 D이 투자한 1억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5. 10.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에서 위 약정에 따른 인수자금 명목으로 D이 지정하는 (주)H I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중도금 6,000만 원 부분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중도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5. 5. 10.부터 2016. 9. 1.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와 주식회사 H에 송금한 합계 3,450만 원 중 3,000만 원이 위 중도금의 일부로 인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배우자 C의 G은행 계좌로 2017. 6. 26. 1,800만 원을, 같은 달 28.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을 피고가 중도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양도약정 제3항에 따라 원고를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제3항에 규정된 반대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횡령금을 지급한 것은 변제로 인정될 수 없고, 횡령금을 중도금으로 인정한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5. 1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횡령금 3,45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중도금 6,000만 원의 일부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영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록 3,000만 원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차후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양도약정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이상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가 직접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잔금 2,000만 원 부분

1) 위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제자인 원고가 2018. 1. 23. 금원 지급의 명목을 잔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2,000만 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고, 원고가 이를 소외 회사에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잔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면 소외 회사 계좌로 바로 다시 송금하면 되는 것임에도, 원고는 지금까지의 양수대금 지급방식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배우자 C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갑 제2호증), ② 원고는 2018. 1. 23. 소외 회사의 돈 2,2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여 당일 피고의 배우자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2호증, 을 제1, 2, 호증), ③ 이에 따라 피고 주장대로라면 당일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 제12호증 등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8. 1. 23. 당시 원고에게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횡령금 반환을 요구한 것인지 지급기일을 어긴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그 무렵 횡령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C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소외 회사로 반환하지 않았고, 약 4개월에 걸쳐 19,500,000원만 반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제13호증), ⑤ 원고가 2,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상,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 잔금 20,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반환의무는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청구가 포함된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변제한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700만 원은 피고와 원고가 동업하기로 하여 설립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이를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9. 16. 200만 원, 2013. 10. 31. 300만 원, 2013. 11. 12. 500만 원, 2013. 12. 16. 1,6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8.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3,7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 16, 20호증의 신빙성은 결국 E 진술이 믿을만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 15, 17호증,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는 원고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서는 피고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8, 13, 14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3. 10. 17.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전인 2013. 9.경부터 회사의 설립 당시 부족한 운전자금 및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3,7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법인 설립일인 2013. 10. 17.부터 마지막 송금 일자인 2014. 1. 18.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던 사실, ③ 앞서 본 것처럼 그 실질은 주식양도계약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 차입금 상환 합의서에 피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3,700만 원이 피고가 지금껏 투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정산금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위 3,7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아직 법인 설립 이전이고 동업자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여 이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며, 소외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는 2013. 11. 6. 개설되었으나 이는 2014. 7.경까지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3,700만 원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긴 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였거나 원고가 개인적으로 그 반환을 약정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잔금 2,000만 원 부분)와 피고의 항소(본소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김민지

판사한대광